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1997. 11. 12.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主要骨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7.11.26. ~ '97.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0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
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7. 11. 26 (수) ~ 1997. 12. 2 (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배상대 [간사] 한대운 [위원] 김성환, 김영식, 김종열, 유동균,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홍성환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실	압민상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97.11. 8.(토) ~11.12.(수)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감사관계 자료수합	
	11.13.(목)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14.(금)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 공보	
	11.15.(토) ~ 11.25.(화)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위원장의 감사선언	
	97.11.26.(수) ~ 12. 2.(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치 사리 결단 과제	97.12. 3.(수) ~ 12.23.(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의회사무국 1997년도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보고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일자 : 1997. 11. 12.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1.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
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
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틀 심
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主要骨字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97.11.26 ~ '97.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
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10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3. 關係法規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7. 11. 26 (수) ~ 1997. 12. 2 (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24개동)

4.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장] 김효철 [간사] 김세창 [위원]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렬, 이진표, 정만직, 한수근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총무재무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임민상

5. 監査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97.11. 8.(토) ~11.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수합 	
	11.1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11.15.(토) ~11.2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97.11.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의 감사선언 ○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 감사담당관 감사 - 문화공보담당관 감사 	
	'97.11.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총무과 감사 - 민원봉사과 감사 - 사회진흥과 감사 - 지방위재난관리과 감사 	
	'97.11.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 증인선서 - 재무과 감사 - 세무1과 감사 - 세무2과 감사 - 지적과 감사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 시 단 계	97.11.29.(토) ~12. 1.(월)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24개동중 3개동 선별감사)	
	97.12. 2.(화)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감 처 사 리 결 단 과 제	97.12. 3.(수) ~12.23.(화)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처리및요구사항 이송	

6. 監査要領

감사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구 행정
에 관하여 보고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
에 보고한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 번	안 호	
--------	--------	--

제안일자 : 1997. 11. 11.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의를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함. (1997. 11. 26. ~ 1997. 12. 2.)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로 함.
- 감사반 편성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9인)으로 함.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실 및 해당동사무소로 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997.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 (24개동)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 무 직 원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 박영길 간사 유동근 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웅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시 민 국, 보 건 소, 동 사 무 소	시민보건 위원회실, 동사무소	조 황 현

5. 감사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7. 11. 8. ~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97. 11. 13.	*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97. 11. 14.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홍보	
	'97. 11. 15. ~ 11. 25.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7. 11. 26.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97. 11. 27.	*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97. 11. 28.	* 시민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시민국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감사 —가정복지과 감사	
	'97. 11. 29.	—위생과 감사 —산업과 감사	
	'97. 12. 1.	—환경과 감사 —청소과 감사	
	'97. 12. 2.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보건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보건소 업무보고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보건행정과 감사 —보건지도과 감사 —의약과 감사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결과 처리단계	'97. 12. 3. ~ 12. 23.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감사는 시민국 및 보건소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업무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	--

제안일자 : 1997. 11. 12.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골자

-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 (1997. 11. 26. ~ 12. 2.)
-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12명)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 동사무소로 한다.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지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監査 期間

○ 1997. 11. 26.(수) ~ 1997. 12. 2.(화) [7일간]

監査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24개동)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간사 이재선 위원 권오범, 김명식 박동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찬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도시건설 위원회실 동사무소	박준배

監査 日程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97. 11. 8. ~ 11. 12.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11. 13.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서 이송	
		11. 14.	
	11. 15. ~11. 25.		
실시 단계	'97. 11. 26.	* 위원장의 감사선언 *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주택과 감사 - 재개발과 - 도시정비과 감사 - 교통행정과 감사 - 교통지도과 감사 - 건축과 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97. 11. 28.	*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건설관리과 감사 - 토목과 감사 - 하수과 감사 - 공원녹지과 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실시 단 계	'97. 11. 29.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필요시 현지확인
	'97. 12. 1.	-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동사무소 감사	
	'97. 12. 2.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감처 사리 결단 과제	,97. 12. 3.~ '97. 12. 23.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이송	

監査 要領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 동사무소별로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行政 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